

 국토교통부 <small>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mall>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9. 23(화) 총 5매(본문 4, 붙임 1)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 과장 김상문, 사무관 최찬, 주무관 오승윤 • ☎ (044)201-3755, 4082, 4752
보도일시		2014년 9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된다.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 28개 과제 제안 -

-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아산 오피스텔 전도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자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금일(9.25, 15:00~18:00)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처벌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사·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현행	개선
처벌대상 (10년 징역)	건축사·시공사·공사감리자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추가
중벌대상 (10년 징역)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	모든 건축물 인명피해
처벌업무	업무상 과실, 설비기준 위반 등	유지관리, 내화구조, 마감재료, 내진설계 등 추가

- 설계도서를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 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높이 13미터 이상·기둥 간격이 10m 이상 등 충족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TF에서는 현행 연면적 기준 5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 부착물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제도를 마련한다.
- 이 외에, 고양이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담고 있다.

-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제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찬 사무관(☎ 044-201-40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9. 25(목) 15:00~17:00, 건설공제조합(2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석대상 : 지자체 공무원, 학계, 업계, 시민단체, 연구원 등
 - ※ 지정토론자 (좌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류찬희 (서울신문 기자) ·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박홍근 (서울대 교수) · 이정면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 **주요일정**

순서	시간		주요내용	비고
1부	14:40~15:00	20	참석자 등록	
	15:00~15:10	10	인사말	건축정책관
	15:10~16:00	50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안) 발표	오상근 교수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16:00~16:20	20	휴식	
2부	16:20~17:40	80	지정토론	지정토론자
	17:40~18:00	2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